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82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8일
발 의 자 :이영실, 권수정, 김경영, 김경우, 김기대, 김제리, 김춘례, 김화숙, 박기재, 이광호, 이정인, 조상호, 황인구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~5분 내에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음.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함.

○ 또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으며, 심정지가 발생한 후 병원 전단계의 일반인의 적절한 심폐소생술 시행은 심정지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음.

○ 본 조례개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의 대상을 확대하고, 민관협업방안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교육계획에 민관활성화 방안을 명시함. (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)

나.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 자함. (안 제7조제2항제3호)

다.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,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함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육·홍보”를 “홍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교육을 위하여”를 “심폐소생술 교육에”로 한다.

2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

4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

제6조제4호 중 “처지”를 “처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5년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)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

2.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

3.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

4.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	제4조(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	2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
3.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	3. ---------- 홍보 ----------
<신 설>	4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5. ----- 심폐소생술 교육에 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교육내용)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교육내용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 등	4. ---------- 처치 ----------
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 ① (생 략)	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	② ----------

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,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	3. ---------- 3년 이상 ----------
제9조(심폐소생술 교육 홍보) 시장은 홍보물,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.	제9조(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)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 1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.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.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.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